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나111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나1119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2가단510687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클래스한결, 담당변호사 전인준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음, 담당변호사 하우원

변론종결 2024. 9. 27.

판결선고 2024. 10. 2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2가단5106876 판결

주문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식회사 D((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경남 함안군 E, 2층)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내지 28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25.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20. 6. 25. 접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30992호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30994호로,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30995호로,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30993호로,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30996호로, 별지7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30997호로, 별지8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30998호로, 별지9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30998호로, 별지10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30999호로, 별지1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30997호로, 별지1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31000호로, 별지1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31002호로, 별지1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31003호로, 별지17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31004호로, 별지18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31005호로, 별지19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31003호로, 별지20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30996호로, 별지2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31005호로, 별지2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31006호로, 별지2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31005호로, 별지2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31002호로, 별지2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31005호로, 별지26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31004호로, 별지27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31006호로, 별지28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31007호로 각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를 고려하더라도,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8쪽 4째 줄 다음에 다음을 추가하는 외에는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5. 결론’ 부분 제외).

2. 추가하는 부분

‘7)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은 종전 관리형 신탁계약과 그 내용과 주체만 변경되었을 뿐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까지 변동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당심과 그 결론이 같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창국, 판사 이중민, 판사 김소영